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면”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 단서”를 “법 제34조제2항제3호”로,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을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로 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

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제44조의 제목 “(부수업무 등의 공고)”를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등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하려는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에”를 “영위하고자 하는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 또는 제41조제4항”으로, “신고일”을 “보고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수업무”를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2.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3.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내부통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업무를 수탁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의 자산 매매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다만,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교류 차단대상의 부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나. 교류 차단대상 정보별 교류차단대상 부문의 범위 설정
다.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별 또는 부문별 책임자의 지정
2.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간에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

나.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록 작성 및 유지

3.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거래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특정 및 유형화

나.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대한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대상목록의 작성·관리 및 그에 따른 상시적 감시체계 수립·운영

다. 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상충 방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의 선임 및 지원부서 설치·운영(해당 임원 및 지원부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2. 점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1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서면”을 각각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거나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당 주권을 배정받고자 하는 개인인 청약자의 중복청약(하나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증권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 행위

나. 가목에 따라 중복청약을 확인했음에도 청약자가 최초로 청약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청약자에게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제77조의5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제38조제3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을 말한다.

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해외현지법인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해외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신용공여 한도를 말한다.

제176조의9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리사주조합이 주권상장법인의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이 경우 배정받기를 원하는 범위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제3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임직원이 법 제45조제1항·제2항과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45조제3항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충실하게 작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로 보아 법 제4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편 및 제5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권한
가. 법 제428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중 부과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나. 법 제449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중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387조의2제7항 중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8조제5항제4호의2 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제387조의2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68조제5항제4호의2 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별표 20 제18호 중 “접수”를 “접수, 제5항에 따른 수리”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청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18. (생략)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1. ~ 18. (현행과 같음)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생략) <신설> <신설>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④ 법 제34조제2항제3호----- ----- 하나 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다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나.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라.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려는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4. 부수업무의 내용

5.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

다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영위하고자 하는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 또는 제41조제4항 --- 보고일-----.

1. (현행과 같음)

2.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3.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4.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

5.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제2항-----.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

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나. 내부감사업무

다. 위험관리업무

라.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

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 나목 및 라목의 업무

나.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2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

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
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

2)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
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
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운
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
권, 장내파생상품, 「외국
환거래법」에 따른 대외
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
문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
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
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
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6)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

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
수하는 업무

라.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투자자
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
자문계약자산 총액의 100
분의 50 범위에서의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마.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는 제외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
산의 운용업무

2)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
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
위에서의 운용업무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
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
무

4)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 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바.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

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 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5)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산의 보관·관리업무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
적 업무(법 제42조제4항에 따
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47조제2항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생략)

② · ③ (생략)

<신 설>

영위하
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1. ~ 3. (현행과 같음)

<작 제>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
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법 제42
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인

제48조(재위탁의 범위) 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

가. 전산관리·운영 업무

나. 고지서 등 발송 업무

다. 보관업무(신탁업에 해당
하는 보관 업무는 제외한다)

라. 조사분석 업무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업무를 수탁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47조제2항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마. 법률검토 업무

바. 회계관리 업무

사. 문서 등의 접수 업무

아. 채권추심 업무

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순 업무

2.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호 다목의 업무(외화자산의 평가 업무로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제47조제1항제5호나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4. 제4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전자등록주식등,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및 외화자산의 보관·관리업무(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

를 포함한다)와 같은 호 라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유재산운용업무(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이 아닌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의 자산매매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다만,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헌황에 관한 정보

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
합투자재산·신탁재산 중 금
융투자상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
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
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
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3항에서 같
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
금융업무 간의 경우

나.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
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전
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
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
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
업 간의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인
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교류 차단대상의 부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식
별 및 설정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나. 교류 차단대상 정보별 교
류차단대상 부문의 범위
설정

다.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
별 또는 부문별 책임자의
지정

2.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
적 교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간에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

다.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
무, 그 밖에 고객의 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용
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
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
하 이 목에서 “판매업무
등”이라 한다)와 신탁업 간
의 경우.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판매업무등과 다른 투자
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2)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
개업자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
일임업과 판매업무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투
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
용업무 간의 경우

3)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

나.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
의 예외적 교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기록 작성 및
유지

3.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거래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
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
래의 특정 및 유형화

나.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
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
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대한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대상목록의
작성·관리 및 그에 따른
상시적 감시체계 수립·운
영

다. 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
계약체결 등 업무를 처리
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
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
는 경우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상충 방지에

· 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 간의 경우

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탁업자(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신탁업 간의 경우

마.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외의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의 선임 및 지원부서 설치 · 운영(해당 임원 및 지원부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2. 점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간의 경우

바.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기업금융업무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간의 경우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에 대한 매

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
는 업무

3) 법 제393조에 따른 증권
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
는 장중대량매매(場中大
量賣買) 또는 시간외대량
매매(時間外大量賣買)의
방법,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4)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
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
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
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
하는 업무

5)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
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
집·사모·매출의 주선
과정에서 해당 증권을 투
자자에게 취득시키는 업
무

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7)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라 한다) 또는 법 제229
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
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
다)의 설정·설립이나 운
용에 관한 자문업무 또는
중개·주선업무에 수반
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업
무

8) 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
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
업무

9)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업무

나. 기업금융업무 중 제68조
제2항제4호의3 또는 제4호

의4에 따른 업무와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의 경우

다.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
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
는 모집·매출·사모의 주
선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라. 기업금융업무 중 제24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운용업무와 집
합투자업 간의 경우

마.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3.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
용업무·금융투자업(전담중개
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
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
다.

가.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
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
선이나 대리업무 및 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공매
도 주문의 수탁업무 간의
경우

나.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
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
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

다.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
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매
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

라.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

4.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
무 간의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
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
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
만,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
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
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
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
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
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
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
개중요정보

③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
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
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
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

되지 아니하는 방법

④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삭 제>

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라 한다)

2. 금융투자업자가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

②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제공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매매주문 업무에 필요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종류·가격·수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
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
증권 판매회사 또는 계열
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
조제1항에 따라 그 금융투
자업자가 경영하는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게 위탁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
6항에 따른 정보를 그 계
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열회사에 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2. 법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
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하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집합투자업(외국 법령
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
자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무
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
가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업
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
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
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
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중 집합투자업
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
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
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겸
직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
니하는 임직원을 계열회사
에 파견하여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
거나 계열회사에서 집합투
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파견받
아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
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
일임업자(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
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
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
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
하는 경우

라.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

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
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
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
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
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
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
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
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
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
우

마.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
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
여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
에서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파견받
아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바.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
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에 설립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가 투자한 회사(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한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 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사. 집합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아.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금융 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

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법 제45조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 · 상담 · 투자권유 ·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 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③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4.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④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하여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⑤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2. ----- ----- <u>서면, 전화</u> · <u>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3. ----- ----- <u>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④ (생략)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u>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거나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u>가. 해당 주권을 배정받고자 하는 개인인 청약자의 중복청약(하나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증권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 행위</u> <u>나. 가목에 따라 중복청약을 확인했음에도 청약자가 최초로 청약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청약자에게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u>
5. ~ 14. (생략)	5. ~ 14. (현행과 같음)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 ⑤ (생략)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제38조제3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을 말한다.</u>
<u><신 설></u>	<u>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해외현지법인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 자본의 100분의 10을, 해외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신용공여 한도를 말한다.</u>
<u>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⑧ ----- 제7항까지-----</u>
<u>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② (생 략)</u>	<u>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② (현행과 같음)</u>
<u>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③ -----</u>

<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u>
<u>1. (생 략)</u>	<u>1. (현행과 같음)</u>
<u>2. 삭 제</u>	
<u><신 설></u>	<u>3. 우리사주조합이 주권상장법인의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이 경우 배정받기를 원하는 범위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u>
<u>④ (생 략)</u>	<u>④ (현행과 같음)</u>
<u>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u>	<u>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u>
<u>· ② (생 략)</u>	<u>· ②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③ 임직원이 법 제45조제1항·제2항과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45조제3항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충실하게 작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로 보아 법 제4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u>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법 제2편 및 제5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권한
	가. 법 제428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중 부과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나. 법 제449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중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생략)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 다음 각 호의 ----- ----- ----- -----.
<신설>	1.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신설>	2. 제68조제5항제4호의2 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⑩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제68조제5항제4호의2 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⑪ ~ ⑰ (생략)	⑪ ~ ⑰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2